

제410회 임시회

'23. 7. 14.(금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김정일 의원 등 7명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3년 7월 3일
- 회부일자 : 2023년 7월 6일

## 3. 제안사유

-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 4. 주요내용

- 청소년활동 진흥을 추진하기 위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
-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의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활동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주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
-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출배경

-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주간 및 청소년의 날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**안 제1조**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것으로, 「청소년 기본법」 및 「청소년 활동 진흥법」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활동의 지원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목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.
- **안 제4조**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,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됨.
- **안 제5조**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에 관한 것으로, 도지사는 청소년이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 확보에 노력하도록 명시하여 실행력 제고를 도모하였음.
- **안 제7조**는 매년 5월 셋째 주를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주간으로,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여 청소년활동 활성화를

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,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6조에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.

- 안 제8조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,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서는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음.
- 안 제10조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 인프라를 조성하여 건전한 청소년활동 유도 및 주체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.
- 또한,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주간 및 청소년의 날은 청소년의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.